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2
----------	-----

2023. 9. 19.(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국기 의원
- 나. 발의일자 : 2023년 8월 28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 9월 7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국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내수면어업 육성·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안 제4조)
- 내수면어업 사업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5조 ~ 안 제6조)
-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 가. (필요성) 이 조례안은 내수면어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식별된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
- 나. (타당성)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지원 내용과 심의 자문을 위한 협의회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음
- 다.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라. 다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충청북도의 내수면어업 관련 정책을 되돌아 보고, 강점은 보강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수면어업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4.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육성
5. 내수면어업 전문 인력양성
6.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
2. 내수면어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4.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5. 내수면어업인 및 관련 단체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지원대상의 선정
3. 사업의 추진실적의 분석·점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산 또는 생물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 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회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내수면어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2020. 2. 18.>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 8. 27.>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
-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

2. 비용 발생 요인

- 내수면어업인 지원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사업지원)
- 조례안 제6조(사업대상)
- 조례안 제9조(협약회의 운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
- 내용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및 안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내수면어업발전협의회 운영수당에 대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내수면어업발전협의회 운영 수당 : 1,200천원
 - (신규) 위원회 운영 수당 : 100천원 × 6명 × 2회 = 1,200천원

○ 수산분야 보조사업(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외 21종)

- (기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 30,000천원 × 1개소(150㎡) = 30,000천원
- (기존) 수산종자 매입방류 : 350원 × 1,470천미 = 514,777천원
- (기존)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 10,000천원 × 13개소 = 130,000천원
- (기존)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 : 8,000천원 × 25척 = 200,000천원
- (기존) 토종붕어 대량생산 지원 : 20,000천원 × 10개소 = 200,000천원
- (기존)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지원 : 350원 × 285천미 = 100,000천원
- (기존)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 : 3,200원 × 50톤 = 160,000천원
- (기존)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제공 : 6,700원 × 220명 = 14,850천원
- (기존)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 893천원 × 91개소 = 81,263천원
- (기존)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 13,500천원 × 6개소 = 81,000천원
- (기존) 친환경 미꾸라지 양어장 종자구입비 지원 : 5,625천원 × 16개소 = 90,000천원
- (기존)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 9,000천원 × 17개소 = 153,000천원
- (기존) 내수면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정비 : 8,100천원 × 10개소 = 81,000천원
- (기존) 양어용 배합사료 및 어류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 13,285천원 × 7개소 = 93,000천원
- (기존)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사업 : 10,000천원 × 5개소 = 50,000천원
- (기존) 내수면 어도 개보수 : 125,000천원 × 6개소 = 750,000천원
- (기존) 자율관리어업 육성 : 100,000천원 × 1개소 = 100,000천원
- (기존)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 223,550천원 × 1개소 = 223,500천원
- (기존) 양식장 폐사어 처리기 설치 지원 : 11,250천원 × 4개소 = 45,000천원
- (기존)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 : 51,500천원 × 1종 = 51,500천원
- (기존)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 10,340천원 × 4개소 = 41,360천원
- (기존) 연어류(송어) 발안란 구입비 지원 : 8,000천원 × 8개소 = 64,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